



제322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 2 차 기 획 행 정 위 원 회

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
출연금 증액안(소상공인 특례보증)

검 토 보 고 서

2026. 10. 8.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안(소상공인 특례보증)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0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 업 명 :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
- 사업목적 :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보증 제공
- 출연금 개요
 - 지원대상 : 소상공인, 청년인증기업, 창업기업
 - 지원내용 : 소상공인 당 최대 5천만원 용자 특례보증 지원
 - 출연기관 : (재)경기신용보증재단
 - 출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출연금	11,700	1,500	2,000	2,000	2,000	2,100	2,100

- 지원실적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
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	업체수	보증액
소상공인	759	21,625	746	19,725	847	20,931	861	21,955

- 출연금 증액 : 2,100백만원 → 3,100백만원 (1,000백만원 증액)
- 증액 사유 :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로 급증한 특례보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자원 확보

○ 특례보증 현황 (2026. 6. 30.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예산액(출연금)	보증규모	집행액	집행률	보증잔액	비고
2,100	21,000	16,228	77.3%	4,772	출연금 10배수 보증

○ 증액 효과

- 보증배수(10배수) 적용 시 100억 원 규모 보증지원 가능
- 긴급 재정수요 적기 대응
-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본점 이전에 따른 소기업·소상공인 맞춤 정책금융 선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관련부서 : 지역경제과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출연금을 당초 21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,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배수 10배를 적용하면 추가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됨.

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출연금 증액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장기화,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기존 보증잔액만으로는 하반기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출연금 증액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보증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, 보증 공급 실적과 사고율·대위변제율 등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 특정 업종이나 대상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☑ 「지방재정법」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☑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

제7조(기본재산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성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 2. 금융회사등의 출연금
 3. 기업의 출연금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
- ②~⑤항 생략

☑ 「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8조(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.